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0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3월 16일
- 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3월 2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3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구청장이 보건소장·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, 근거 법령 등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현행화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근거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사무명, 제명, 조 번호 등 수정
 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

구청장이 보건소장·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과 근거 법령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별표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고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별표 제7호는 「약사법」 개정으로 “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”를 위임사무에 신설하고, “재교부”를 상위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에 맞춰 “재발급”으로 정정함.
- 안 별표 제11호 및 안 별표 제17호는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의 조항을 정정한 것이며,
- 안 별표 제26호부터 안 별표 제28호까지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제명 및 근거조항을 정정한 것임.
- 안 별표 제33호는 「결핵예방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입원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“격리치료 명령”을 추가하고, 입원명령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개정된 법률의 ‘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지원’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임 사무명을 정정함.
- 안 별표 제36호 및 제37호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위임 사무명을 정정함.
- 안 별표 제38호부터 안 별표 제40호까지는 근거법령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구청장 권한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정비함.
- 안 별표 제45호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를 근거법령인 「약사법」의 규정에 맞춰 위임 사무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, “지위 승계”, “보고와 검사” 및 “폐기 명령”에 관한 위임사무를 추가함.
- 안 별표 제48호는 「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미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시·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사무권한 이양이 예정됨에 따라,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에 이를 신설하고 안 별표 제48호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함.
- 그 외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사무위임 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고,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하고

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
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3월

발의자: 이규선, 신흥식, 우경란

전승관, 이순우, 박현우 의원 (6인)

1. 제안이유

구청장이 보건소장,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, 근거 법령 등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현행화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 법령의 제, 개정에 따른 사무명, 제명, 조 번호 등 수정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농지법」,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,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07.02.22, 2009.04.23., 2012.05.17.,
2013.12.12., 2018.12.20., 2021.7.15., 2021.12.30.>

위 입 사 무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1. 삭제 <1999. 8.16> 2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. 삭제 <2021.12.30.> 나. 7급이하 지방공무원 소내전보 다. 삭제 <2021.12.30.> 라. 삭제 <2021.12.30.>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및 제30조의5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7조 및제 26조	보건소장
3. 삭제<2000.12. 1> 4. 삭제<2000.12. 1> 5. 삭제<2000.12. 1> 6. 삭제<2000.12. 1> 7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 사항 등록 나. 삭제 다.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라. 폐업,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	「약사법」 제20조 삭제 삭제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2조	보건소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<p>마.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변경.폐지신고 수리</p> <p>바. 지도감독(보고와 검사 등, 폐기, 개수, 허가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</p> <p>사. 허가증, 등록증의 갱신, 재발급</p> <p>아. 과징금, 과태료 등 부과</p> <p>8.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, 신고사항 변경, 폐업 등의 신고</p> <p>나. 지도 감독(보고와 검사 등, 폐기, 사용중지 명령,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)</p> <p>다. 과징금 부과 및 징수</p> <p>라. 청문</p> <p>마. 과태료 부과 및 징수</p> <p>9.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)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개설신고의 수리</p> <p>나. 변경신고의 수리</p> <p>다. 휴.폐업신고의 수리</p> <p>라. 의료기관 감독(지도와 명령, 보고와 업무검사 등, 개설허가의 취소 등, 과징금, 과태료 처분 등)</p>	<p>같은 법 제41조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2조</p> <p>같은 법 제69조, 제69조의4,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, 제74조, 제75조, 제75조의2, 제76조, 제77조 및 제78조</p> <p>같은 법 제8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7조</p> <p>같은 법 제81조 및 제98조</p> <p>의료기기법 제17조</p> <p>같은 법 제32조, 제34조, 제35조 및 제36조</p> <p>같은 법 제38조</p> <p>같은 법 제39조</p> <p>같은 법 제56조</p> <p>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</p> <p>같은 법 제33조제5항</p> <p>같은 법 제40조</p> <p>같은 법 제59조, 제61조, 제63조, 제64조, 제67조 및 제92조</p>	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10. 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(의원, 치과 의원, 한의원) 개설신고의 수리	「의료법」 제35조	보건소장
11. 안마시술소.접골소.침 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	「의료법」 제81조,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에 관한규칙」 제17조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	보건소장
12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건소장
가. 개설등록 신청 등	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	
나. 휴업·폐업 등의 신고 수리	같은 법 제13조	
다. 보고와 검사 등	같은 법 제15조	
라. 개설등록의 취소 등	같은 법 제24조	
마. 과태료 부과 징수	같은 법 제33조	
바. 시정명령	같은 법 제23조	
사. 청문 실시	같은 법 제26조	
13.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 음의 사무		보건소장
가. 개설등록 신고 수리	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	
나. 휴업·폐업 등의 신고 수리	같은 법 제13조	
다. 보고와 검사	같은 법 제15조	
라. 시정명령	같은 법 제23조	
마. 개설등록의 취소	같은 법 제24조	
바. 청문 실시	같은 법 제26조	
사. 과태료 부과 징수	같은 법 제33조	
14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		
가. 신고	「의료법」 제37조 및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	
나. 지도·감독	같은 규칙 제16조제1항	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20.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대상자 신청 접수 나. 수급자증명서 발급 다.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제28조	동장
21.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	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9조	동 장
22.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신청·접수에 관한 사무	「기초연금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	동 장
23.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급여신청 접수 나. 한부모가족 지원증명서 발급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	동 장
24. 삭제<2021.7.15.>		
25. 대형폐기물 수집,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	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7조	동 장
26.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	동 장
27.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	동 장
28.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에 관한 사무	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5조	동 장
29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	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0조	동 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<p>관한 사무</p> <p>30.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검진</p> <p>나. 역학조사</p> <p>다. 치료권고</p> <p>라. 치료 및 보호조치 등</p> <p>마. 부양가족의 보호</p> <p>31.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소독업의 신고수리</p> <p>나. 휴업 등의 신고수리</p> <p>다. 서류제출 및 검사</p> <p>라. 시정명령</p> <p>마. 영업정지 등</p>	<p>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 제8조</p> <p>같은 법 제10조</p> <p>같은 법 제14조</p> <p>같은 법 제15조</p> <p>같은 법 제20조</p> <p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</p> <p>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</p> <p>같은 법 제57조</p> <p>같은 법 제58조</p> <p>같은 법 제59조</p>	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
<p>32.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역학조사</p> <p>나.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</p> <p>다.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</p> <p>라.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</p> <p>마.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</p> <p>바. 감염병 유행에 관한 방역조치</p>	<p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</p> <p>같은 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</p> <p>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</p> <p>같은 법 제41조제3항</p> <p>같은 법 제42조</p> <p>같은 법 제47조</p>	<p>보건소장</p>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사.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아.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자. 감염병의 예방조치 차. 소독의무 카. 소독업무의 대행	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6조	
33. 결핵 예방에 관한 다 음의 사무 가. 결핵관리종합계획 시 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.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 조사 다. 결핵검진 라. 결핵예방접종의 실시 마. 업무종사자의 일시 제한 및 해제 바. 입원명령 및 격리치료 명령 사.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등의 생활보호 아. 결핵환자 등의 의료실시 자.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 자의 관리	「결핵예방법」 제5조제3항 「결핵예방법」 제10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, 제15조의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16조, 제16조의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9조	보건소장
34.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 음의 사무 가. 산후조리업 신고수리 나. 산후조리업 승계 다. 보고.출입.검사	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	보건소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37.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	「치매관리법」제17조	보건소장
38.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건소장
가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	
나.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시행	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	
다.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	같은 법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, 제2항 및 제10조의2	
39.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		보건소장
가.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청문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4항·제5항, 제20조, 제32조제2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2조제1호	
나. 정신요양시설의 설치·운영	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	
다. 정신요양시설의 폐지·휴지·재개 신고	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	
라.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청문	같은 법 제25조, 제32조제3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조제2호,	
마. 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	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·제18조	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바. 정신재활시설의 폐지·휴지·재개 신고 사.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청문	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, 제32조제4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제3호	
40.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및 입원 등 나. 입원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의 확인 다.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라.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마. 입원기간 연장, (임시) 퇴원, 또는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바.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의 회부 사. 입원기간 연장, (임시) 퇴원, 또는 처우개선 등의 명령 또는 결정 아. 입원의 해제 자. 임시 퇴원 차. 외래치료 지원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·제27조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제43조제6항 및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6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7조의2	보건소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카. 보고·검사 등 타.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파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같은 법 제6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 법 제81조의2 같은 법 제89조	
41.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.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다. 의약품도매상 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. 보고와 검사 등 마. 시정명령 바. 업무개시 명령 등 사. 폐기명령 등 및 사실 공표 아. 개수명령 자.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차. 허가증 등의 갱신 카. 허가증 등의 재발급 타.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.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2.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신고	「약사법」 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및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「의료법」 제16조 및 「의료기관세탁	보건소장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<p>나. 시정명령 다.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p> <p>43.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.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·감독</p> <p>44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가.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,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(단,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) 나. 청문 다.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. 과태료 부과 및 징수</p>	<p>물 관리규칙」 제7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92조</p> <p>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같은 법 제50조</p> <p>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5조 제3항</p> <p>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</p>	<p>보건소장</p> <p>보건소장</p>
<p>45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·변경등록 나. 폐업·휴업·재개 신고</p>	<p>「약사법」 제44조의2 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·제22조·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</p>	<p>보건소장</p>

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다. 지위 승계 라. 보고와 검사 등 마. 폐기 명령 등 바. 등록취소 사. 청문 아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자. 면허증 등의 재발급 차. 시정명령	같은 법 제4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6, 제69조 같은 법 제44조의6, 제71조 및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제1호의2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69조의4	
46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	「의료법」 제38조	보건소장
47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가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.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	동장
48.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,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. 과징금 부과 및 징수	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	보건소장